

# 광명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 기준 지침

제정 2015. 11. 2 예규 제 88호  
일부개정 2018. 2. 2 훈령 제394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
## I. 목적

- 본 지침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돌발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연·인공비탈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고
-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상시계측관리 결과와 강수량·비탈면의 성상(性狀)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정·운영해야 할 주민대피 관리 기준의 세부지침임

## II. 법적근거

-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(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·운영)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제정·운영하여야 함

### < 참고법령 >

-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(대피명령 등)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조치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(대피명령)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위험지역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명령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(강제대피조치)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

### Ⅲ. 주민대피 관리기준

① 주민대피계획 수립 개요

□ 주 체 : 광명시장

○ 붕괴위험지역 또는 계측관리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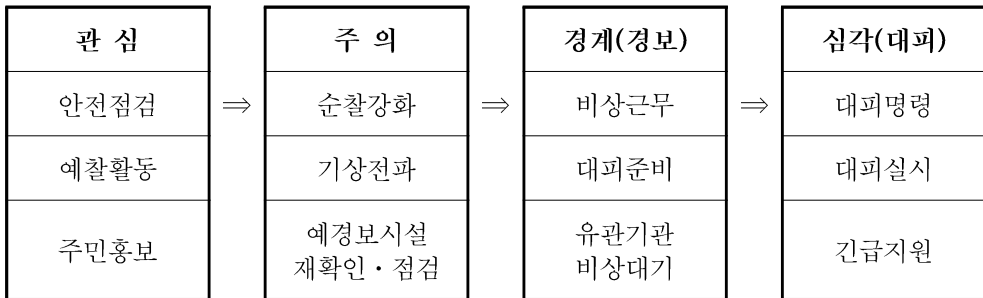
□ 대피대상

○ 붕괴위험지역의 기상예보·특보 시 및 상시계측결과 비탈면 성상의 변화 등으로 붕괴가 예측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인근지역의 주민 등

□ 대피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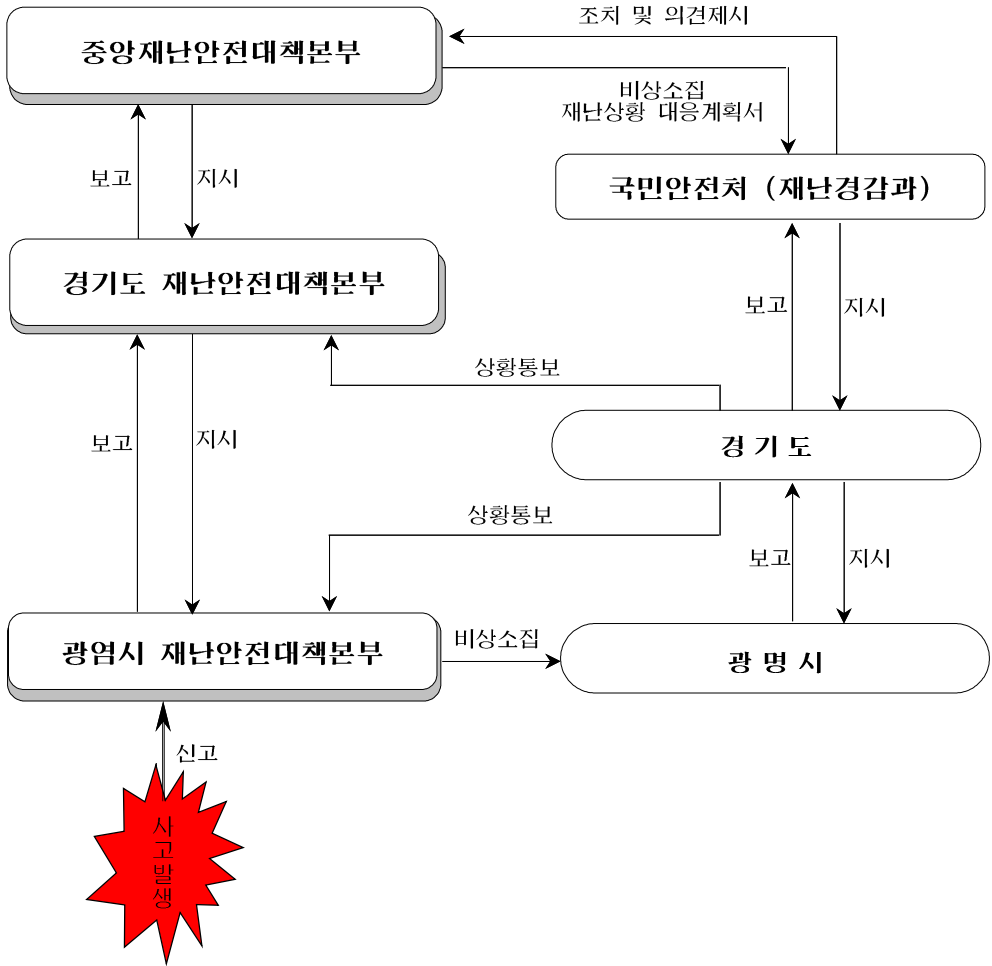
○ 해빙기 및 여름철 태풍 등 우기시

○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의 관리기준 권고내역에 따라 주민대피 시기 등 기준 설정



단 계	기준 및 강우량 (mm)			
	15분 최대강우량	1시간 최대강우량	1일 누적강우량	2일 누적강우량
관 심	11	22	79	112
주 의	16	32	112	160
경 계	21	57	196	256
심 각	25	70	256	281

2 상황관리 체계



3 비탈면 성상에 따른 붕괴징후 판단기준

□ 평상시 붕괴우려 징후

- 비탈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
-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외부 영향 없이 갑자기 멈출 때
- 갑자기 경사지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
-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거리거나 내려앉을 때
- 주위에서 폭발 등 작업이 없는데 ‘우웅’하는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
-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던 지역에 물이 솟아나거나 포화되는 경우

- 지면·포장도로 또는 인도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거나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경우
- 콘크리트 바닥이나 기초가 기울거나 균열이 가는 경우
- 전신주, 나무, 방음벽, 울타리 등이 기울어지는 경우
- 비가 계속 내리거나 그친 경우에도 불구하고, 계속 물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
- 비가 오는 중이거나 비가 그친 후 붕괴 징후
- <암반 급경사지>
- 지속적인 배출수가 발생하거나 작은 암반의 탈락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
- 낙석방지망 및 방호책 뒷부분에 낙석이 쌓여 있는 경우
- 암반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경우
- <토사로 구성된 급경사지>
- 급경사지 주변에 시공되어 있는 배수구가 막혀 있는 경우
- 지속적으로 토사가 유실되거나 증가하는 경우
- 급경사지 하단부에 토사가 적체되거나 길 또는 도로부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
- 강우 발생 시 급경사지 내부에 물고랑이 발생하여 심하게 토사유실이 발생하는 경우
- <옹벽 및 석축>
- 통상 비가 오더라도 혼탁해진 적이 없는 배수구의 물이 갑자기 혼탁해지거나 배수량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
- 옹벽이나 석축 배면의 토압이 증가하거나 기초지반의 변형이 발생하여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발생한 경우
- 평소 작은 균열이 커지면서 단차가 발생하는 것은 붕괴가 발생하는 조짐
- ※ 옹벽이나 석축의 일정 구간에 배부름 현상 및 상부가 전면으로 돌출된 것은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임으로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홍보 및 계도 실시

4 단계별 주민대피 주요 조치사항

- 관심단계
- 대피소 지정, 유관기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 등 현장대응 매뉴얼 작성 [별표 1]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전파 [별표 2] [별표 3]
-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 등 예찰활동 지속 추진
- 계측기 설치지역, 계측기 변위여부 등 계측장비 정상 작동여부 확인

- 대피소, 대피로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
- 주민대피 관련 보고체계 및 주요 조치내용 사전 숙지
- 붕괴징후 시 주민대피 요령 등 사전 홍보 및 교육
  - 대피소, 대피정보 전달체계 확립(마을 통장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), 대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민의 강제적 행정조치 사전 홍보 등

□ 주의단계

- 계측빈도 및 CCTV 관찰 증가, 현장상황 파악을 위한 순찰강화
- 기상정보(강우량·기상특보 등) 파악 및 전파
- 통장, 지역자율방재단, 민간모니터위원 등 비상연락망 가동
- 급경사지 붕괴 인접지역 거동 불편자 사전 이동조치
- 예·경보시설 등 긴급점검 및 보수 실시
  - 자동음성·문자통보시스템 등 각종 예·경보시설의 작동상태 점검
  -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연계된 앰프의 전원차단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고 정비 필요
  - ※ 예·경보시설의 긴급점검 및 보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락체계 구축

□ 경계단계(경보)

- ◇ 현장순찰강화, 비상근무 실시, 대상지구 주민에게 대피준비 통보 및 안내요원, 대피담당자, 지역자율방재단 등 임무 수행 사전교육 실시
  - 자동음성·문자통보시스템, 앰프, 전화, 이동차량, 방송, FAX 등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



**안내요원, 대피담당자, 지역자율방재단, 통장 등은 수신여부 확인**

- 안내요원, 대피담당자, 지역자율방재단 및 대피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자신의 역할 교육 실시 및 현장 파견 실시
- 붕괴위험지역 대피 대상자 수요 사전 파악
- 대피소 개방과 대피소 기본시설 설치 및 부족 물품 보완, 비상인력 대기(정전과 야간 대피를 위한 물품 등 확인)
  - 업무담당자는 물품 부족 등 필요시 즉시 지원요청
- 대피로 상태점검 및 긴급보수 등 실시

※ 긴급보수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내 민간사업체와 연락체계 구축

- 대피소, 대피로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확인
  - 개인별 손전등, 비상물품 등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
  - 대피주민 수, 주민특성(재해약자 등), 위급환자 위치 사전 파악 등
    - 위급환자가 자력 대피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피담당자 별도 지정
  - 광명경찰서, 광명소방서, 육군 제2506부대, 광명시 자율방재단, 적십자사광명시지회 자원봉사자 등 긴급대피 관련 유관기관·단체 역할 재점검 및 인력·장비·자재 등 비상대기 협조 요청
  - 해당 지역 주민에게 준비사항 등 긴급 안내
    - 대피지도를 긴급 배포하거나 재난 예·경보시스템 활용
    - 대피 시 이웃주민 대피여부도 확인하도록 안내
    - 통장이 마을 앰프를 활용, 대피장소, 대피로 및 준비사항 등 방송 실시
  - CBS문자방송, 지역방송 등 홍보방송 실시
  -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경계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각단계 추진
- 심각단계(대피)
- 피해의 위험을 알리고 주민대피 실시(필요시 대피명령) [별표 4]
    - 자동문자·음성통보시스템, 자동우량경보시설, 앰프, 전화, 라디오, 순찰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
    - 안전대피로 확보, 대피로 장애물 제거, 대피경로 유도, 대피 수단 제공, 교통통제 등 지원
    - 경고판 및 통제선(Safety Line) 설치
  - 광명경찰서, 광명소방서, 육군제 2506부대, 광명시보건소, 광명시지역자율방재단, 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·단체에 주민대피 긴급지원 요청
    - 유관기관 등은 사전계획에 따라 주민대피, 대피소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, 장비, 자재 등 긴급지원
  - 대피물자, 인력, 장비·자재 등 신속히 지원
    - 현지요청 또는 상황판단에 따라 필요한 물자·인력·장비 신속 지원
  - 안내요원, 대피담당자 등의 수신 여부는 반드시 재확인 필요
    - 안내요원, 대피담당자 및 대피관련 각 업무 담당자는 임무에 따른 역할 수행으로 주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함
  - 대피완료 후 대피상황을 NDMS에 입력·보고
    - 대피지구명, 대피장소, 대피인원, 피해현황, 완료시각 등

- 피해내역 파악 및 긴급지원 대책 파악

부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2. 2 훈령 제394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규정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광명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 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부서명란의 “광역도로과”를 “도로과”로 “첨단도시교통과”를 “도시교통과”로 한다.

③ 및 ④ 생략

[별표 1]

주민대피에 따른 담당자 및 유관기관별 임무

□ 관심, 주의, 경계단계 담당자별 임무

담당자별	주요 임무
총괄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대피 준비 통보(가능한 모든 예·경보 시스템 활용)</li> <li>● 대피담당자에게 대비단계 임무 수행 지시</li> <li>● 주민대피시기 판단을 위하여 현장상황 수시파악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장상황 파악은 대피담당자 또는 대책본부 상황보고 시스템 활용</li> <li>- 대피담당자의 고유임무(주민대피)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상황보고 요구 자제</li> <li>- 업무총괄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책본부에서 총괄업무 수행(현장 출장 자제)</li> </ul> </li> <li>● 대피 불응자 강제대피 등을 위하여 필요시 대피명령 공문서 작성을 완료하고 결재 대기(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및 제42조)</li> </ul>
안내요원 (공무원, 민간인, 지역자율방재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1개 지구에 안내요원이 여러인 경우는 1명을 선정, 현장을 총괄하도록 함(현장총괄담당자)</li> <li>● 담당지구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현장상황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대피 방해요인 유무 확인 및 위험요소 수시 점검</li> </ul> </li> <li>● 대피담당자는 담당지역 주민대피를 최우선으로 추진</li> <li>● 전화·방문 등을 통한 담당지구 주민의 현황파악</li> <li>● 앰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피 준비 전파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피소, 대피로, 대피준비물, 행동요령 등 사전 전파</li> <li>- 대피 준비물은 대피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상시 대피소의 상황을 파악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물품을 대피지도, 대피수첩 등에 표시하거나 미리 통보</li> </ul> </li> <li>● 해당지역 주민 대피와 관련된 특이사항 파악·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피를 위하여 인력·차량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</li> <li>- 기타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파악 및 지원요청 등</li> <li>- 필요시 경찰, 소방서, 병원 등에 지원 요청</li> </ul> </li> <li>● 대피로 점검 및 대피소 상황파악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피로의 파손여부 및 차량이동 가능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</li> <li>- 대피소 기본시설 확인 및 필요한 사항 지원요청</li> </ul> </li> <li>● 재해약자 담당자·총괄 담당자와 지속적인 정보교환</li> <li>● 기타 담당지역의 대피관련 전반적인 사항 파악·보고 등</li> </ul>



담당자별	주요 임무
대피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재해약자의 상태확인 및 대피 준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강상태, 대피수단의 유무, 자력대피 가능여부(가족 등), 대피준비물 확보 상태 등</li> <li>- 필요시 차량, 생활필수품 준비 등 대피준비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● 대피장소, 대피소 등 사전확인</li> <li>● 안내요원에게 상황 전달</li> </ul>
업무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황관리의 대비단계(사전준비)부분 업무 수행</li> </ul>
대피자 (해당지역 주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대피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피준비물, 대피안내도·대피수첩 준비, 가족의 위치·상태 확인, 대피소 위치 확인, 차량 등 대피수단 확인</li> <li>- 외출한 가족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을 취하고, 연락 불가 시 대피장소, 연락처 등을 표시한 메모지 부착</li> </ul> </li> <li>● 지구 밖의 안전한 장소에 있는 가족이나 친·인척 등에게 대피사실 알림</li> <li>● 가능하면 이웃과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상호지원을 통한 안전도모</li> <li>● 문단속, 전기, 가스 등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종 대피 시에는 누전차단기를 내리고, 가스 밸브 차단</li> </ul> </li> </ul>

□ 심각단계 담당자별 임무

담당자별	주요 임무
총괄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대피지시 : 예·경보시설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피지시는 가능한 모든 예·경보시설 활용</li> <li>- 1차 지시 후 안내요원, 대피담당자에게는 재차 발송 및 확인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● 대피 불응자 강제대피 등을 위하여 필요시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 시행(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및 제42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강제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소방서·경찰에 협조요청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● 안내요원·대피담당자 등과 지속적인 연락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장상황,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실시간 파악</li> </ul> </li> <li>● 지원요청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괄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책본부에서 총괄 업무 수행(현장 출장 자제)</li> </ul> </li> <li>● 경찰에 대피차량 유도 및 대피지구 치안유지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피지구 차량유도 및 치안유지는 유관기관인 경찰과 평상시 협조체계 구축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● 상황계획서에 의거 NDMS에 입력·보고</li> </ul>

담당자별	주요임무
<p>안내요원 (공무원, 민간인, 지역자율방재단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대피지시 확인 즉시 담당지구 주민 대피 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주민 대피 안내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주민 대피 여부 확인</li> <li>- 대피소, 안전한 대피로, 준비물 등에 대하여 안내</li> <li>-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피 후 또는 대피 과정 중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적극 만류</li> <li>- 대피 불응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·소방 등에 협조 요청하여 강제대피</li> <li>- 위급환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, 경찰, 병원 등에 협조요청</li> <li>- 주민대피 후 치안 필요시 경찰에 협조요청</li> <li>- 안내요원은 담당지구에 대한 수첩을 항상 휴대</li> </ul> </li> <li>● 최종까지 현장에 남아서 전원 대피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철수 전에 대피담당자에게 재해약자 대피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</li> </ul> </li> </ul>
<p>안내요원 (공무원, 민간인, 지역자율방재단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각종 상황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고수단 : 전화, 무전기 및 활용 가능한 수단</li> <li>&lt;대피보고 - 총괄담당자에게 보고&gt;</li> <li>- 보고시기 : 대피지시를 받은 직후 또는 대피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보고</li> <li>&lt;시작보고 - 현장총괄 담당자가 총괄담당자에게 보고&gt;</li> <li>- 보고시기 : 주민에게 대피안내 방송 직후</li> <li>- 보고내용 : 대피시작 시각 및 현지 상황, 지원요청 등</li> <li>&lt;완료보고 - 현장총괄 담당자가 총괄담당자에게 보고&gt;</li> <li>- 보고시기 : 주민 대피 완료 확인 직후</li> <li>- 보고내용 : 완료시각, 대피장소 등 개략적인 내용</li> <li>&lt;세부보고 - 현장총괄 담당자가 총괄담당자에게 보고&gt;</li> <li>- 보고시기 : 지구별 대피인원 파악 후</li> <li>- 보고내용 : 대피소별 인원,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</li> </ul> </li> <li>※ 안내요원 중 현장총괄 담당자를 선정한 경우에 다른 안내요원은 현장총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.</li> </ul>
<p>대피담당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담당한 재해약자를 지정된 대피방법으로 지정된 대피장소로 최우선 대피</li> <li>● 재해약자 대피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지원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접 병원이나 119, 경찰 등에 지원요청(사후보고)</li> </ul> </li> <li>● 상황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고수단 : 전화, 무전기 및 활용 가능한 수단</li> <li>&lt;대피보고 - 총괄담당자에게 보고&gt;</li> <li>- 보고시기 : 대피지시를 받은 직후 또는 대피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보고</li> <li>- 보고내용 : 대피지시 내용 및 담당 재해약자 등</li> <li>&lt;완료보고 - 현지 총괄담당자에게 보고&gt;</li> <li>- 보고시기 : 재해약자 대피완료 직후 안내요원에게 보고</li> <li>- 보고내용 : 완료시각, 대피장소, 이름, 현 상황, 지원필요 사항 등</li> </ul> </li> <li>● 재해약자 대피완료 후 안내요원을 도와주고 안내요원과 같이 최종 철수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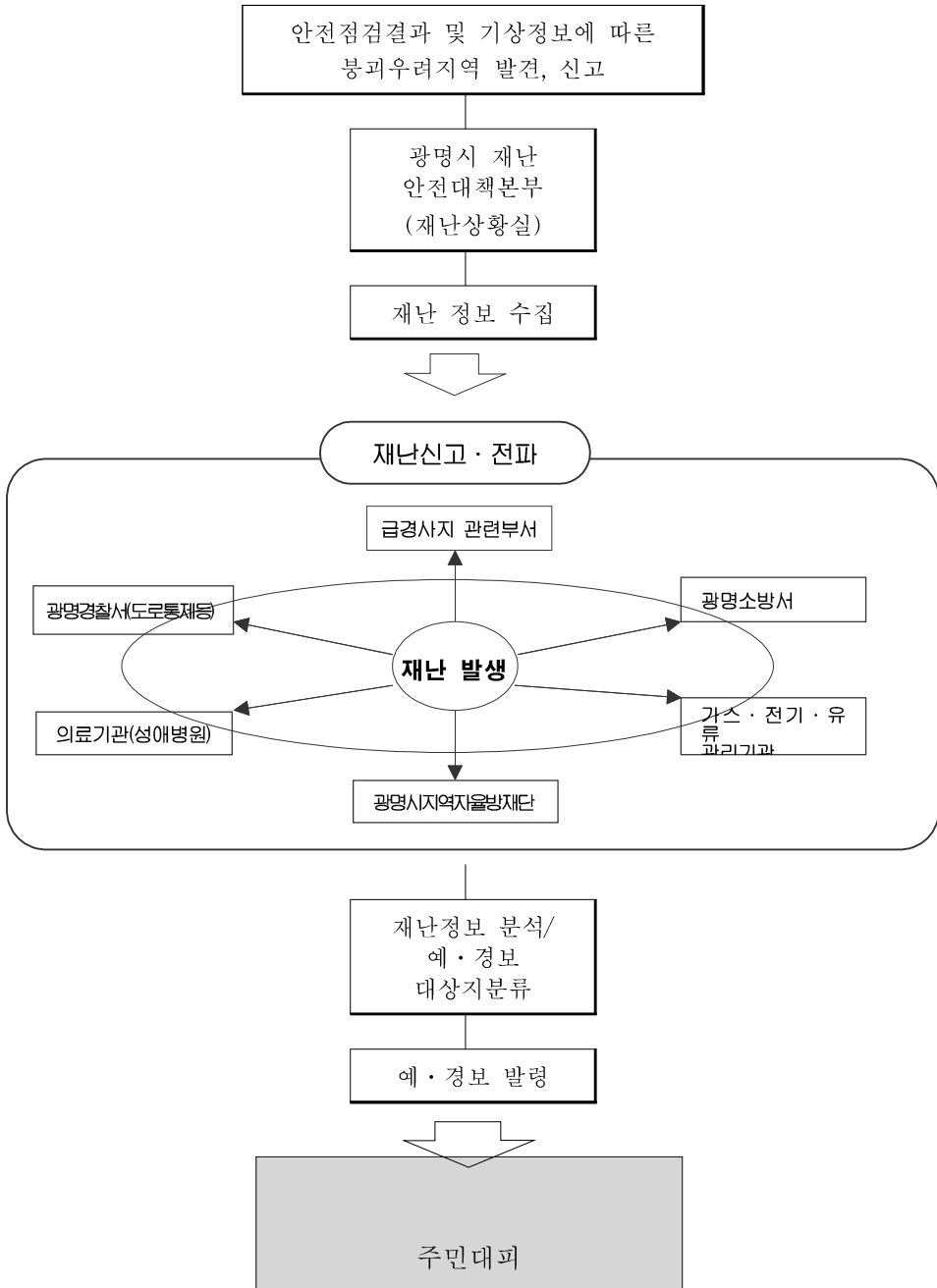
□ 유관기관별 임무 및 역할

기관별	임 무 / 역 할
광명경찰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치안 유지</li> <li>● 도로통제 및 우회도로 사전 파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Police Line 설치, 교통통제</li> <li>- 도로 교통통제 지원 및 우회도로 지정(필요시)</li> <li>- 사상자 신원확인</li> <li>- 응급복구 장비 지원요청</li> <li>- 사상자 후송을 위한 통행로 확보</li> </ul> </li> </ul>
광명소방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상자 발생 시 구조·구급(119 상황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명피해 현황 확인 및 인명구조대책 수립</li> <li>- 사상자 후송을 위한 통행로 확보</li> <li>- 사상자 응급처치, 의료기관 확보, 이송조치</li> <li>-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, 신원파악 및 가족과의 연락 등</li> </ul> </li> </ul>
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해당지역에 출입통제를 위해 Safety Line 설치 및 경찰 지원</li> </ul>
성애병원 등 의료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부상자 치료 및 사망자 장례절차 협조</li> </ul>
한국 전기안전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신속한 복구 작업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</li> </ul>
한국 가스안전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신속한 복구 작업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</li> </ul>
민간건설시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응급복구 장비 지원</li> </ul>

※ 유관기관 등과 사전에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임무를 부여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상황대처

[별표 2]

### 주민대피 상황전파 체계도



[별표 3] <개정 2018. 2. 2>

### 기관별 비상연락망

국민안전처

부 서	직 위	연 락 처	비 고
재난관리실	실 장	(사) 02-2100-0600	
재난예방정책관	재난예방정책관	(사) 02-2100-0610	
재난경감과	과 장	(사) 02-2100-0629	
"	급경사지계장	(사) 02-2100-0640	
"	사무관	(사) 02-2100-0632	
"	주무관	(사) 02-2100-0641	
"	주무관	(사) 02-2100-0641	

경기도

부 서	직 위	연 락 처	비 고
재난대책과	과장	(사) 031-231-0340	
"	방재대책팀장	(사) 031-231-0350	
"	주무관	(사) 031-231-0356	

광 명 시

부 서	직 위	연 락 처	비 고
안전총괄과	안전총괄과장	(사) 02-2680-2364	
"	재난시설팀장	(사) 02-2680-2671	
"	담당자	"	

□ 관련부서

부 서	직 위	연 락 처	비 고
자치행정과 총무팀	주무관	02-2680-2092	행정 지원
주택안전과 주택안전팀	주무관	02-2680-2360	시설물관리
도로과 도로시설팀	주무관	02-2680-2930	도로시설,관리
도시교통과 교통대책팀	주무관	02-2680-6488	교통통제,정비
공원녹지과 산림팀	주무관	02-2680-2339	공원관리
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	주무관	02-2680-6761	이재민구호

□ 유관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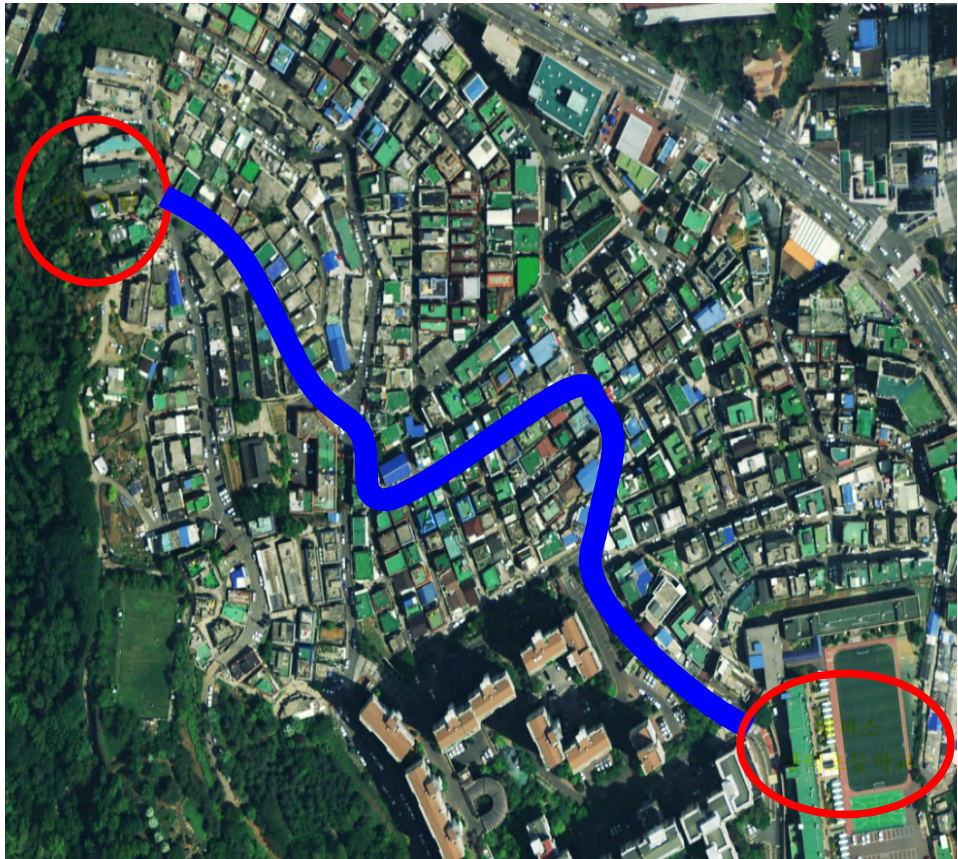
주관기관(부서)	직 위	연 락 처	비 고
광명소방서	소방교	02-2680-3412	
광명경찰서	경 장	02-2093-0257	
광명교육지원청	서 기	02-2610-0525	
한국전력공사 광명지점	대 리	02-2680-3273	
KT개봉지점	차 장	02-2682-0060	
KT금천지점	대 리	02-807-0060	
육군제2506부대	-	교 환 031-482-1113	
한국가스안전공사	과 장	032-345-0019	
한국전기안전공사	대 리	031-440-2119	
(주)삼천리도시가스	과 장	02-842-3002	

[별표 4]

지구별 주민대피 계획

□ 서울연립 급경사지 주민대피소 현황

대피소명	광덕초등학교		광명시 오리로 841번길 9(철산동)		
거 리	1.28km		소요 시간	20분	수용 가능인원 688명
현장관리	행정실		02-2616-4148		
관련기관	통장				
	행정	철산4동 주민센터	02-2680-5228		
	경찰	광명경찰서	02-2093-0257		
	소방	광명소방서	02-2680-3412		



광명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 지침

서울연립 급경사지 재해약자 대피대상자 명단

성명 (나이)	주소	전화번호	보호자	대피장소	대피수단	담당자	비고

서울연립 급경사지 대피대상자 및 안내요원 지정

연번	대 피 대 상				안내요원
	성명	주소	연락처		
			자택	휴대폰	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13					
14					
15					
16					
17					
18					
19					
20					
21					
22					
23					



□ 아주레미콘 급경사지 주민대피소 현황

대피소명	광일초등학교		광명시 목감로 34-6		
거 리	1.7km	소요 시간	20분	수용 가능인원	240명
현장관리	행정실		02-2615-9658		
관련기관	통장				
	행정	광명6동 주민센터	02-2680-5115		
	경찰	광명경찰서	02-2093-0257		
	소방	광명소방서	02-2680-3412		



아주레미콘 급경사지 재해약자 대피대상자 명단

성 명 (나 이)	주 소	전화번호	보호자	대피장소	대피수단	담당자	비 고

아주레미콘 급경사지 대피대상자 및 안내요원 지정

연번	대 피 대 상				안내요원
	성 명	주 소	연 락 처		
			자 택	휴대폰	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
- ※ 1) 아주레미콘 지역 급경사지 주변은 주거용 밀집 건축물이 없는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,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, 붕괴로 인한 상시 인명피해는 예상되지 않는 지역임.
- 2) 문제점 예상은 폭우 등 예상치 않은 집중호우시 급경사지 붕괴될 경우 급경사지 하부 일부 도로 교통장애 등이 예견될 경우를 고려 안내 요원을 정하여 통행 및 출입금지토록 하여 피해가 없도록 대비코자 함.